

**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 모상금 지급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**

**<제188회 임시회>**

2010. 6. 11

**달 성 군 의 회  
전문위원 백 진 흠**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### 검 토 보 고

#### I. 개 요

1. 제 출 일 : 2010년 6월 4일
2. 제 출 자 : 달성군수(세무과장)
3. 개정이유

○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의한 교부금 징수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세입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고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4. 주요내용

-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신설(안 제2조)
-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교부금의 10% 지급기준 신설(안 제3조)

#### 5. 관계법령

- 「지방세법」 제56조 및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44조

## II. 검토의견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,

### 1. 개정안의 취지

- 본 조례안은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 차량 징수촉탁 협약서가 체결되어 자동차세 징수촉탁제가 시행(2009.11.1)됨에 따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.

### 2. 개정안 타당성 검토

-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규정(「지방세법」 제56조제3항)이 신설되어, 징수촉탁으로 인한 체납세 징수시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여,
-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징수촉탁 업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
## 관 계 법령

### 〈지방세법〉

- 제56조(징수촉탁) ①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,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.
1.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
  2. 체납처분비
- ③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,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,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### 〈지방세법 시행령〉

- 제44조(촉탁징수절차등)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하여야 한다.
1. 납세의무자 또는 징수의무자의 원주소와 현주소
  2. 징수촉탁하는 지방세의 연도, 세목, 과세대상물건, 과세표준액, 세율,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
  3.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
  4. 기타 참고사항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④법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"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.